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4년 3월 30일

제안자 : 이기동 의원외

□ 제안이유

- 토요일무제 및 토요일전일근무제 시행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본 조례의 개정과 직접 관련 없는 다른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토요일무제 및 토요일전일근무제 시행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조문에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를 삽입하고,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함 (안 제15조의2 제1항)
- 교육감이 연가계획을 수립 실시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함(제18조 제1항)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변경하는 부칙 조항을 삭제함(안 부칙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요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안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u>	<u>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u>	(개정안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u>제15조의2(토요일전일근무제)①교육감은 국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부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u>	<u>제15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①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u>	<u>제15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①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요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u>
②토요일 전일 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개정안과 같음)
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 . 공무원의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교육감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1. 제명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 공무원여비조례”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한다.</p> <p>2 제1조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 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p> <p>(삭 제)</p>